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역할_(5) 대외 커뮤니케이션

김 유 경 상무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

youkyoungkim@kr.kpmg.com

1. 감사기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의 의의

주주가 정확한 경영정보를 시의적절하게 제공받는 것은 주주총회 참석권 및 의결권, 경영과실을 배분받을 권리, 주주대표소송 등 다른 여러 가지 권리를 실효성 있게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기업의 협조 없이는 현실적으로 외부자의 정보 취득이 어렵기 때문에, 기업이 자발적·적극적으로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까지 기업의 경영공시는 과거 영업실적, 향후 사업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의 구성 및 활동, 임원 보수, 이사회 및 산하 위원회별 운영규정, 외부감사 소요시간 및 투입인력,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준수 여부 등 기업지배구조 정보로까지 공시의 저변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사업보고서 의무공시사항 이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기업은 드물다.

다만 2014년 12월 제정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¹⁾’에 따라 금융회사의 경우 연차보고서에 지배구조 정보를 비교적 풍부히 공시하고 있으며, 2013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연간 5억 원 이상의 보수를 지급받는 임원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에 개인별 보수총액, 구성내역, 산정기준, 산정방법을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²⁾. 또한 2014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인은 감사보고서에 외부감사 참여인원 수, 감사내용 및 소요시간, 지배기구와의 커뮤니케이션 횟수 등 외부감사 실시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³⁾. 이처럼 공시를 강화하려는 법제도 측면에서의 노력은 지속되고 있으나, 국내 기업들의 감사기구 및 기타 기업지배구조 정보 공시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및 OECD의 「G20/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은 주주가 정기적으로 시의성 있게 회사에 관한 정보를 취득할 권리가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Ⅲ. 감사기구」 중 「1. 내부감사기구」 영역에서는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역할 중 하나로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명시하고 있다.

[표 1]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감사기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의무 관련 규정

한국기업지배구조원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p>1.3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는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p> <p>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가 수행할 주요 감사업무는 다음과 같다.</p> <p>(중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규정 또는 감사규정 명문화 및 그 내용의 공시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의 활동과 독립성에 대한 내용의 주기적 공시

1) 현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 제2항 제3호 (2013.5.28. 개정)
 3)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3항 (2014.5.28. 신설)

감사기구 관련 공시는 사내 IR부서 등 공시 실무담당자의 노력 뿐 아니라 감사위원 및 감사의 적극적인 협조도 요구된다. 감사(위원)는 평시에 감사위원회 회의록 또는 감사록을 충실히 작성하고 체계적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감사위원회 안건의 세부내용 및 각 위원이 회의 중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도 개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사기구 관련 내용을 포함한 지배구조 정보가 충실히 공시됨으로써, 자본시장이 자율적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모니터링하고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

2. 감사기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유형

감사(위원회)와 주주 간 커뮤니케이션 통로는 크게 ‘보고서’와 ‘주주총회’의 두 가지가 있다.

(1) 보고서를 통한 공시

기업은 사업보고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연차보고서, 홈페이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구성 및 활동내역을 공시할 수 있다. 보고서를 통한 공시는 구두 커뮤니케이션 대비 더 많은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를 통해 대외에 전달할 수 있는 감사기구 관련 정보의 예시는 아래와 같다.

- 감사위원·감사 각 개인의 성명, 경력 및 기타 독립성·전문성 관련 자격요건
- 감사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감사: 이사회 참석 여부)
- 감사위원 각 개인의 회의 참석 여부 및 연간 참석률, 회의 불참 사유
- 감사위원회 회의 안건 세부내용
- 감사위원 각 개인의 각 안건에 대한 찬반 여부, 안건 반대 사유, 안건 중 중요하게 다루었던 이슈에 대한 부가 설명
- 감사위원회·감사 활동 수행을 위한 각 개인별 투입시간
- 감사위원회·감사로서 책무를 이행한 상세 활동내역
 - 회계감독 업무
 -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업무
 - 외부감사인 선임·감독·평가 업무
 - 리스크 관리 업무 등
- 감사위원·감사 각 개인의 감사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이수 여부
- 감사위원·감사 개인별 성과 평가결과, 개인별 보수

(2) 주주총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

Global KPMG ACI⁴⁾의 설문에 따르면, 감사위원회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과 직접 대면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 이사회 의장이나 CEO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을 응대하는 역할을 맡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청이 있을 경우 감사위원이나 감사는 기꺼이 주주들과 만날 수 있다. 다만 감사(위원)와 주주 간 대화는 재무제표, 외부감사인 선임과 같이 감사(위원회)의 역할과 관련된 이슈로 국한된다. 그러나 감사(위원회) 관련 이슈는 높은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감사(위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들과 직접 대담

4) Audit Committee Institute, ACI Korea의 국문 명칭은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을 나누는 것이 권고되는 바이다.

3. 국내 감사기구 공시 관련 법규 및 실태

(1)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국내 법규 중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이 제6장 '공시' 부문 제54조(정기공시)에서 금융회사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에 '감사위원회 활동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의 역할·책임 및 운영에 관한 기준, 위원회 구성원 명단 및 경력, 위원회 회의 개최횟수 및 개인별 참석 현황도 연차보고서 공시항목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구성원의 최소 3분의 2 이상이 사외이사여야 하므로 동 규준에서 정하고 있는 사외이사 보수, 사외이사 평가결과 등 사외이사에 관한 공시사항도 감사위원회 공시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금년 8월부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사실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은 선진국에서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매우 진보적인 의무사항이 다수 포함된 규준이기에 참고해 볼 만 하다.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근거, 금융투자협회는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은 주로 아래 서식을 활용해 감사위원회 관련 공시를 수행하고 있다.

[표 2] 감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공시 서식

성명	상임/사외/비상임	직위	선임일	임기 만료일
○○○	사외	위원장	'13.3.24.	'16.3.23
△△△	상임	상임감사위원	'13.3.24.	'16.3.23

[표 3] 감사위원회 회의에 관한 공시 서식

항목	위원 별 활동 내역				가결여부
1. 위원 성명	○○○	△△△	□□□	...	
2. 참석여부 및 (불참)사유					
3. 보고안건에 대한 의견					
4. 의결안건					
가. 1호안건(안건내용)	찬성	찬성	반대		가결
나. 2호안건(안건내용)	찬성	찬성	찬성		가결

(2)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지배구조 평가문항 내 감사기구 공시 관련 항목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매년 국내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ESG 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중 기업지배구조 평가는 '주주권리보호', '이사회', '공시', '감사기구', '경영과 실배분'의 5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이 중 '감사기구' 영역은 감사위원회/상근감사/비상근감사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내 사외이사 구성 비중, 감사위원회 개최횟수, 감사위원의 수정/반대 의견 현황 등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 및 평가하는 부문이다. 반면, '공시' 영역에 포함된 평가문

5) 2014년 기준 / 오덕교, "2014년 지배구조 평가 및 실태 분석: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7호, 2014.07.

항들은 사업보고서, 홈페이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공시를 얼마나 상세히, 정확히 하고 있는 지에 대한 척도인데,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와 홈페이지를 통한 공시로 세부영역이 다시 구분된다.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할 사항 중 감사(위원회) 운영규정, 감사(위원)의 성명·선임일·임기, 감사위원회 활동내역, 외부감사인의 법인명·선임일·계약기간·최근 감사의견 등 감사기구와 관련된 것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⁶⁾. 홈페이지에 감사기구 및 외부감사인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공시하고 있는 국내 기업 또는 기업집단으로는 신한금융지주, KT, SK하이닉스, 포스코, 두산그룹 등이 있다.

4. 해외 감사기구 공시 관련 법규 및 실태

(1) 감사기구 공시에 관한 규정

Citigroup, 네덜란드 연기금(APG), Standard Life,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CalPERS), Ernst&Young 등 유수의 금융회사 및 연기금의 직원으로 구성된 공시개선 워킹그룹(The Enhanced Disclosure Working Group)은, 2011년 10월에 감사위원회 공시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⁷⁾.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 「감사위원회 공시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감사위원회 공시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형식이 아닌 실질을 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활동내역에 관한 형식적 보고를 지양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주요 감사이슈 파악 및 그에 대한 관리방안을 설명하여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된 판단과 추정의 주요 근거 - 특정 이슈 처리를 위한 전문가 활용 - 경영진 및 감사인과의 의견 불일치 사안 - 감사위원회가 주목한 부정 사안
감사위원회 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매년 감사위원회 규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규정은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 주주총회 자료(proxy statement) 안에도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또한 감사위원회 규정에는 위원회의 위임사항과 그에 따르는 책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감사위원회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는 감사위원회의 연간 구성 검토내역 및 감사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는 전문성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공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변경사항 및 그에 대한 설명은 공시되어야 한다.
감사위원회로의 정보 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해야 하며, 이 정보를 검토하고 분석하는 과정은 독립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 감사위원회에 전달되는 정보는 시의적절해야 하며, 완전하고 이해가능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6) 오덕교, “2014년 지배구조 평가 및 실태 분석: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선진상사법률연구 통권 제67호, p.145, 2014.07.

7) 「AUDIT COMMITTEE REPORTS – GLOBAL DISCLOSURE GUIDELINES」, <http://www.enhanceddisclosure.org/pdf/guidelines.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외부감사인으로부터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시의성 있는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주주 및 투자자에게 확신을 주어야 한다.
<p>리스크 및 내부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감사위원회, 기타 관련 위원회는 리스크 및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와 프로세스의 적절한 운영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검토내역, 검토를 통해 발견된 중요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 검토의 범위는 사업모델, 각종 리스크, KPI 관련 인센티브까지 포괄한다.
<p>자산 및 부채 가치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공정가치를 산정하는데 사용한 주요 가정을 충분히 검토 및 공시하고, 감사위원회의 책임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전문가적 의구심을 보유해야 한다. • 가치평가는 정기적으로 세밀한 사후점검을 받아야 한다. • 자산·부채 가치에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는 주주 및 투자자에게 객관적인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p>상각 및 손실 총당부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중대한 상각 및 손실 총당부채 승인 시 고려한 요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 및 이사회는 경영진이 상각 및 손실 총당부채를 추정할 때 진실하고 공정한 보고절차를 거쳤는지, 객관적이었는지, 보편적인 경제적 가정을 고려하였는지, 신중하게 결정하였는지 검토하고 이 추정에 활용한 요소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p>자산유동화, 부외거래, 우발채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모든 중대한 자산유동화, 부외부채, 우발채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재무제표에 상세히 공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가 이러한 부채를 추정할 때 사용한 평가방식은 공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이를 검토하고 이에 관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p>내·외부 감사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내·외부 감사인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의 시기, 방법, 결과를 공시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은 연 1회 평가받아야 하며,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해 진부하지 않은 합리적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비감사용역에 관한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과의 계약기간에 대해 공시하고 외부감사인 선임에 관한 정책도 마련해야 한다. • 외부감사인 변경 시 감사위원회나 이사회는 신속히 변경사항을 공시하고 변경사유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p>감사계획 및 주요 감사 이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감사계획 관련 역할 이행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주요 계열회사 감사인과의 만남을 공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발생한 주요 감사이슈의 특성과 그 해결과정에 대해 공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중요한 내부통제 및 리스크 이슈를 고려하여야 한다. • 또한 주주와 투자자에게 발생한 이슈의 시사점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이 해당 이슈를 검토하고 있거나 검토계획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p>임원 보상 및 리스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위원회는 임원 보수 정책 및 관행에 대해 보상(보수)위원회와 협력한 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 또한 임원, 사업부 리더, 재무·통제·리스크 담당직원에 대한 보수 정책 및 관행이 견고한 통제환경, 신의성실 원칙, 회사의 장기적 목표 등과 연계되는 지 확인해야 한다.

- 만약 이러한 정보가 보상(보수)위원회에 의해 공시될지라도, 감사위원회 보고서는 해당 내용에 대해 (참고해야 할 위치를 알려주는 방식으로라도) 언급을 하여야 한다.

한편,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은 감사위원회가 수행한 활동 중 회계감독, 외부감사인 감독과 관련된 내용은 사업보고서 내 별도 부문에서 공시하여야 한다고 표명하고 있다.

[표 5]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감사기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의무 관련 규정

영국 기업지배구조 모범규준 내 감사기구의 대외 커뮤니케이션 의무
<p>C.3.8. 사업보고서 내 별도 섹션을 마련하여 감사위원회가 그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수행한 활동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사항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무제표와 관련된 중대한 이슈와 그 이슈에 대한 처리방법 • 외부감사 프로세스의 효과성 평가방식, 외부감사인 선임 및 재선임 시 고려사항, 현 외부감사인 계약기간, 마지막입찰이 이루어진 시기, 향후 입찰 계획 • 외부감사인이 비감사용역을 제공할 경우 감사인의 객관성과 독립성 보장에 대한 설명

해외기업 중에서는 기업지배구조 보고서(Corporate Governance Report)를 별도로 발간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으며(예: 네슬레, 볼보) 다수의 해외 금융회사는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사업보고서(Annual Report)에 일반적인 재무정보뿐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정보를 풍부하게 담고 있다.

(2) 감사기구 공시 개선 동향

글로벌 회계·경영컨설팅 업체인 Ernst&Young은 올 9월, 「2016년 감사위원회의 주주 커뮤니케이션 현황(Audit committee reporting to shareholders in 2016)」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Fortune 100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에 관한 공시가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 보수, 외부감사인 평가, 외부감사인 계약기간에 관한 공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 [표 6]은 각 연도별로 조사대상 기업 중 해당 항목을 공시한 기업의 비율을 나타낸다.

[표 6] 2016년 Fortune 100 기업 감사위원회의 주주 커뮤니케이션 현황⁸⁾

대분류	중분류	'16	'15	'14	'13	'12
외부감사인 선임	외부감사인의 선임, 보수 등 전반적인 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82	81	68	55	42
외부감사인 보수	독립성 평가에 해당 외부감사인의 비감사용역 수행 여부 공시	81	82	79	79	14
	외부감사인 보수 책정 관련 책임	29	26	17	9	0
	외부감사인 보수 변경 사유 공시	31	21	19	14	9
외부감사인 평가	외부감사인 자격 및 품질 평가 요소 공개	50	42	33	19	17
	외부감사인 선정 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였는지 공시	73	63	49	22	3
외부감사인 계약기간	외부감사인 계약기간 공시	63	62	51	29	24
	외부감사인 교체 시 평가를 고려하였는지 공시	53	47	33	17	3

8) EY Center for Board Matters, 「Audit committee reporting to shareholders in 2016」, 2016.09.

(3) 감사위원회 공시 의무 위반 처벌 사례

미국 증권시장 상장사의 감사위원(장)들은 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규정에 따라 불성실한, 혹은 악의적인 재무정보 공시를 행하였을 경우 엄격한 처벌을 받는다. SEC Rule of Practice 102조 (e)항 ‘정직 및 자격박탈(Suspension and Disbarment)’ 부문에서는 “전문가로서 지켜야 할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은 감사인들(내부감사, 외부감사)에 대해 징계, 제재 및 해임을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 위반의 사례로 머슬팜(MusclePharm)을 들 수 있다. 당사는 경영진에게 제공한 비현금성 보상(Perk)에 대한 정보 공개를 충실히 하지 않았다. 전임 감사위원장은 내부감사를 통해 상기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정정공시를 하지 않았다. 현직 감사위원장도 임원에게 지급된 보수에 관한 SEC 규정 내 공시 의무를 상세히 파악하지 못하였고, 자연스럽게 공시는 부실화 되었다. 전임 감사위원장은 SEC 임원 보상 공시 관련법에 따라 부실 공시된 사항에 대하여 정정공시할 책임이 있다. 현직 감사위원장은 SEC 임원 보상 공시 관련법과 SEC Rule of Practice 102(e)에 따라 30,000 USD의 벌금과 직무해임 처벌을 받았다. 머슬팜의 감사위원장은 재무감독과 관련한 전통적인 사기혐의(분식회계 등)가 아닌, 부실 공시의 책임에 따라 처벌 받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5. 결론

올해 8월, 싱가포르 경영대학교가 33개 기관투자자와 171명의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투자자와 95%의 개인투자자가 현 재무보고 수준에서 감사위원회의 코멘트가 추가되면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감사(위원회)의 적극적인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투자자들의 요구수준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심지어 미국에서는 대외 커뮤니케이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감사위원에 대한 법적 처벌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재무정보나 감사기구 활동 공시에 관한 감사위원 및 감사의 책임은 막중해지고 있다. 감사위원이나 감사가 직접 공시 실무를 담당하지 않는다 해도, 감사기구에 관해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가 투자자에게 전달되려면 감사기구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안타깝게도, 국내 기업들은 사업보고서에 감사위원회 구성원의 약력, 감사위원회 회의일자 와 안전명, 각 회의별 참석 여부 정도만 공시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안전명 찬반 여부를 공시한다 해도 구체적인 반대 사유나 각 위원이 회의 중 발언한 특이 의견 등을 별도로 공시는 경우는 거의 없다.

감사기구는 회계·재무 전문성을 토대로 재무보고절차 및 재무제표의 진실성에 대한 감독을 수행하고, 경영진의 업무집행을 상시적으로 감독하여 주주-경영진 간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한다. 뿐만 아니라 외부감사인 감독, 리스크 감독, 내부고발(Whistleblow)제도 운영 등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역할은 점점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감사기구가 이처럼 다양한 역할을 ‘실제로’ 성실히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수행한 내용을 대외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여 회사 외부에 있는 주주들이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 또한 중요하다. 덧붙여, 감사기구 스스로 법적 의무 이상으로 자신의 활동에 대해 더 충실히 공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분식회계 발생 시 면책 증거로 해당 공시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는 부수적인 이점도 있다.

요컨대 감사기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감안할 때 대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감사(위원)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인지하고, 감사(위원) 스스로 기업지배구조·감사(위원회) 활동·감사(위원) 자격요건 등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체계적·적극적으로 자본시장에 제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